

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2월 2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3월 13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3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올림픽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의 사무처장(임원)을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임원)에 따라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단의 사무처장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
- 재단의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자 함(안 제6조제4항)

- 사무처장과 직원의 보수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자 함
(안 제10조제2항)
- 재단의 정책,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, 성과급,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함(안 제20조제1항, 제2항, 제3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- 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- 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- 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1부.

2.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3. 14.)

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4. 2. 29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의 사무처장(임원)을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임원)에 따라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재단의 사무처장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
- 재단의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자 함(안 제6조제4항)

- 사무처장과 직원의 보수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자 함
(안 제10조제2항)
- 재단의 정책,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, 성과급,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함(안 제20조제1항, 제2항, 제3항 신설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재단의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3항에서 재단의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.

- 안 제10조는 제2항에서 사무처장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 임용은 관련 법령, 지침, 정관,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자체 조례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으로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붙임 **관계 법령(발췌)**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□ 지방 출자·출연 기관 인사·조직 지침

I. 총 칙

③ 기본원칙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함)의 임용은 법령·이 지침·정관·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

II. 임원의 인사

① 임명 근거

- 출자·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함

②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

가. 직무수행요건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,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

[붙임 2]

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 2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현재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의 사무처장(임원)을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임원)에 따라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
- 나.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사무처장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
- 나. 재단의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자 함(안 제6조제4항)
- 다. 사무처장과 직원의 보수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)
- 라. 재단의 정책,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, 성과급, 인사 등

에 반영하여야함(안 제20조제1항, 제2항, 제3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'24. 1. 26. ~ '24. 2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행정규제 범위 미포함 [기획실-1105(2024.1.16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 [기획실-1105(2024.1.16.)호](개선사항 반영)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923(2024.1.22.)호]

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하고,”를 “하고, 재단의 사무처장과”로, “군수가”를 “이사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임원”을 “임원 중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그 외 임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직원은”을 “사무처장과 직원의”로 한다.

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경영실적 평가) 군수는 재단의 정책,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, 성과급,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,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이사는 재단의 사무처장과 군의 올림픽 유산사업,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3명 이내로 <u>하고</u>,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<u>군수가</u> 임명한다.</p> <p>④ 재단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제10조(사무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직원</u>은 보수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하고, 재단의 사무처장과</u> ----- ----- <u>이사장이</u> -----.</p> <p>④ ----- <u>임원 중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그 외 임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사무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사무처장과 직원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<u>경영실적 평가</u>) <u>군수는 재단의 정책,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20조 · 제21조 (생략)

②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, 성과급,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,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1조 · 제22조 (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)

【 관계법령 발취 】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5.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
6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 운영
9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10. 예산과 회계
11. 정관의 변경
12. 해산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

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

II. 임원의 인사

① 임명 근거

-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함

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

가. 직무수행요건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,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

※ <별표 1 직무수행요건 예시> 참고

나. 자격요건 설정

-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함
 1.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문제해결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소통 능력, 협상 능력,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

2.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,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, 해당 분야의 이해도
3.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

~ 생 략 ~

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

- 출자·출연 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 - 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「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」을 준용할 수 있음

임원 후보자의 모집

가. 공개모집 원칙

- 출자·출연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함 (법 제9조 제2항)
 - 비상근·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공개모집 방식 등을 다른 임원과는 달리 간소화 가능
 - 다만, 임원의 연임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,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,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
- 출자·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함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비용발생요인: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의 사무처장(임원) 공개채용에 따른 연봉액 발생

나. 관련 조문: 조례안 제10조(사무처)제2항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사무처장의 연봉금액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준용하여 4급(상당)공무원 하한액 적용(57,000천원 내외)

* 평창유산재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나. 추계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
연봉액(사무처장)	30,000	57,000	57,000	57,000	57,000

※ 2024년 1회 추경예산 평창유산재단 출연금(운영비)편성

다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년도 예산 편성(군비)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
연락처	(033) 330 - 2018

〈 연도별 비용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해	당	없	음		
세 출	30,000	57,000	57,000	57,000	57,000	258,000
연봉액(사무처장)	30,000	57,000	57,000	57,000	57,000	258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0,000	57,000	57,000	57,000	258,000
	지방세	30,000	57,000	57,000	57,000	258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민간자본						
해외자본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